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직원모집 공고

노인의 취업·알선·상담 등 종합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인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에 근무할 참신하고 유능한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 11. 28.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인원	지원자격
사무국장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61세 미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직업상담사 1급 소지자로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2.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소지자로 직업상담 및 취업업무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공무원 6급 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인복지 또는 재무회계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직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61세 미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직업상담사 1급 소지자로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2.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소지자로 직업상담 및 취업업무 등 근무 경력자. 3.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사회복지 또는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연령제한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5에 해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장소

가. 채용공고 : 2016. 11. 28~ 2016. 12. 9(금)(12일간)

가. 접수기간 : 2016. 11. 28~ 2016. 12. 9(금). ※휴일 접수하지 않음

다. 접수처 및 방법 :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73번지

방문접수(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사무실) /인터넷및우편접수 불가

3. 채용방법

○ 1차(서류심사) : 2016.12.13(화) /서류심사 합격 및 면접대상 개별 통보

○ 2차(면접) : 2016. 12. 15(목) 14:00 / 면접 합격자 통보

- 장소 및 방법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최종 합격자발표 : 2016. 12. 20(화) 14:00(개별통지)

4. 임금 및 근무

가. 임금지급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규정에 의함.

-연봉 : 사무국장 20,000천원 정도 // 직원18,000천원 정도

나. 근무기간 : 계약일 부터 2017. 12. 31. 까지.

※ 전주시와 센터 재위탁시 근무기간 연장 가능.

5.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사진첨부)

3) 자기소개서 1부(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업적,성과내용 포함)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자격증 사본 1부

6) 경력확인서(구체적으로 근무연한 등을 기재후, 해당기관 확인 필)

7) 직원 채용관련 개인 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지원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출력사용

6. 기타 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이미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문의처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사무실(063-227-0857~9)

7. 결격 대상자

- o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o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o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
- o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o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o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